

사단법인 한국유엔제제학회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유엔제제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Academic Council on the United Nations System(약칭 KACUNS)라 표기한다.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내에 두며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부 외에 국내와 국외에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유엔과 그 전문 및 산하기구, 그리고 일반 국제기구(IGO 및 NGO)의 문제에 관한 연구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공표하여 국제평화와 안전, 인권의 보호 및 신장, 환경 보전, 인류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타국의 유사학회와의 폭넓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가간 및 시민사회의 이해와 협력에 기여하며, 유엔과 관련된 학술연구 및 국가정책에 대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2.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3.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4. 기타 본회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반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가입한 자로 조직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 및 취득 절차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고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결의함으로 그 자격을 취득한다.
2. 본회의 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한 인사 또는 단체는 일반이사회가 결의로 특별회원 또는 단체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회는 유엔제제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로서 본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일반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4. 본회는 유엔을 비롯한 다자체제와 다자외교 및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박사, 석사, 학부 과정을 준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본회의 사업 및 학술회합에 참가할 수 있다.
 - ② 본회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고 간행물을 받는다.
 - ③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 투표를 행한다.
2.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 및 고문은 본회에 대하여 전항 제1호 및 제2호의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며 본 정관과 본회의 기관에서 정한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정회원은 일반이사회가 정한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회 이상 회비의 납부를 연체한 경우 정회원의 권리가 중지된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징계, 탈퇴)

1.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는 일반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는 징계와 관련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전항에 규정한 징계 중 제명의 경우 당해 회원은 소명서를 제출하고 일반이사회에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금품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4. 본회의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일반이사 10인 이상
3. 직무이사 5인 이상
4. 감사 2인 이내
5. 고문 약간 명

제12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1. 회장은 일반이사 중 총회에서 재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2. 일반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직무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여 일반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과 직무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일반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갱신하여 일반이사회의 결의로서 추대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권한과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일반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해당 회무를 담당한다.
3. 회장과 직무이사는 직무이사회를 구성하고 해당 회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회계 및 사업진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 하며 일반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4조 (등기이사) 본회는 회장과 직무이사 중 2인을 등기한다.

제15조 (사무담당자의 임명)

1.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대외협력, 출판, 기획 등을 담당하는 직무이사 각 1인을 지정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본 회의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장은 일반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일반이사회 및 직무이사회로 구성하며 회의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17조 (총회)

1. 본회는 매년 2월 중에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2. 총회는 본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 일반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및 정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정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4. 총회 의사록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회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일반이사회)

1. 일반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2. 일반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직무이사회로 위임할 수 있다.
 - ①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총회에 제출되는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총회 또는 직무이사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한 사항

3. 일반이사회는 일반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제3항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직무이사회)

1. 직무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2. 본 정관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외에 본회의 운영 및 사업을 위해 일반이사회가 위임하는 안건들을 결정한다.
3. 직무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직무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 직무이사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전자매체(email 등)를 활용한 방식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제5장 재산 및 회계

제20조 (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①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을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 ②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③ 회계잉여금 중 적립금

제21조 (재산의 관리)

1. 제20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및 기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2. 법인의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2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23조 (경비의 조달 방법 등)

1. 본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이 조성된다.

- ① 기금 및 기타 재산의 운용수익
- ② 정회원의 회비
- ③ 용역에 대한 대가
- ④ 운영자금으로 출연되는 지원금

2. 기금 출현을 위한 기부금과 보조금은 직무이사회 승인을 얻어 접수한다.

제 24조 (회비의 납부) 회비의 금액과 납부방법은 상임 이사회가 정한다.

제 25조 (회계의 구분)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26조 (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행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28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외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 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 29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회의 재산은 이 본회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① 이 본회의 설립자
- ② 이 본회의 임원
- ③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 ④ 이 본회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의 각 호에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30조 (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외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31조 (기부금의 운영관리) 당해 연도말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을 공개하도록 한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32조 (파산신청) 본회는 파산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민법상 관련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산 및 합병) 본회를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일반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4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을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출연한다.

제7장 개정

제35조 (정관개정) 본 정관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정회원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